

행 정 자 치 부

주 의 요 구

제 목 숲아베기를 수반하지 않는 숲가꾸기사업 수의계약 부적정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통영시, 밀양시, 의령군, 함안군, 창녕군, 하동군, 함양군, 합천군

내 용
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를 2010. 1. 25.자로 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예방·방제 및 복구사업, 산림자원의 조성·육성·관리를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·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등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, 부칙(법률 제9961호, 2010. 1. 25.)에서 개정규정 시행일을 5년이 경과한 날(2015. 1. 26.)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

같은 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산림사업의 설계·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은 ① 3헥타르 이상의 조림 또는 벌채사업, ② 50헥타르 이상의 숲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사업, ③ 사방사업, 다만, 감리는 건당 공사비 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, ④ 임도사업, 다만, 감리는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.

경상남도 통영시 등 8개 시·군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20건, 1,817.85ha에 대한 풀베기, 덩굴류제거,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발주하면서

사업자 선정 시 같은 법 제23조의 대행하거나 위탁 조항에 따라 아래
【표】 “○○○○에서 수의계약으로 시행한 풀베기, 덩굴류제거, 어린나무가꾸기 사업현황”과 같이 통영시○○○○ 등 8개 지역○○○○에 수의계약하여 사업을

시행한 바 있다.

【표 ○○○○에서 수의계약으로 시행한 풀베기,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현황】

시군별	연도별	작업종	개 소	실 행 면 적 (ha)	계약방법		계약자	사업비 (천원)	계약기간	준 일 공 차
					방법	법 조 항				
	계		20	1,817.85						
통영시	2015	조림지 풀베기	○○○○ 산 000-00 외 00	60.20	대행	산자법 제23조	통영시 ○○○○	77,860	2015.7.27.-2015.9.14	2015.9.14
"	2016	"	○○○○ 산 142-10 외 161	99.42	대행	산자법 제23조	"	79,089	2016.6.27.-2016.8.5	2016.8.5
"	2016	"	○○○○ 산8-1 외 115	28.43	대행	산자법 제23조	"	28,390	2016.8.17.-2016.9.10	2016.9.10
밀양시	2015	풀베기, 덩굴류 제거	○○면○○리 산65-7외 147필지	253.47	수의	산자법 제23조	밀양시 ○○○○	228,193	2015.7.22.-2015.9.27	2015.9.25
의령군	2015	조림지 풀베기	○○면○○리 산114-2번지외 43 필지	52.0	수의	산자법 제23조	의령군 ○○○○	60,366	2015.6.17.-2015.7.16	2015.7.16
"	2016	" (1차)	○○면○○리 산00-0번지외 00 필지	41.0	수의	산자법 제23조	"	38,087	2016.6.7.-2016.7.6	2016.6.28
"	2016	" (2차)	○○면○○리 산00-0번지외 00 필지	41.0	수의	산자법 제23조	"	38,181	2016.8.18.-2016.9.14	2016.9.8
함안군	2016	조림지 풀베기	○○면○○리 산000번지외 000 필지	178.6	대행	산자법 제23조	함안군 ○○○○	177,222	2016.6.17.-2016.9.4	2016.8.31
창녕군	2015	조림지 풀베기	○○면○○리 산0 외 000필지	348.26	대행	산자법 제23조	창녕군 ○○○○	227,644	2015.6.4.-2015.9.11	2015.9.22
"	2015	"	○○면○○리 산00 외 00필지	187.58	대행	산자법 제23조	"	107,055	2016.6.7.-2016.8.31	2016.9.7
하동군	2016	덩굴류 제거	○○면○○리 산 0번지외 000필지	54.0	수의	산자법 제23조	하동군 ○○○○	77,990	2016.6.2.-2016.6.28	2016.6.28
"	2016	"	○○면○○리 산00-0외 00필지	14.1	수의	산자법 제23조	"	33,490	2016.7.28.-2016.8.26	2016.8.26
"	2016	"	○○면○○리 산000-0번지외 000 필지	70.0	수의	산자법 제23조	"	99,450	2016.8.11.-2016.9.9	2016.9.9
함양군	2015	어린나무 가꾸기	○○면○○리 산00 외00	153.3	대행	산자법 제23조	함양군 ○○○○	182,372	2015.8.24.-2015.9.22	2015.9.23
"	2016	조림지 풀베기	○○면○○리 산00-0 외00	46.0	대행	산자법 제23조	"	47,340	2016.6.29.-2016.8.12	2016.8.17
"	2016	"	○○면○○리 산0 외00	35.7	대행	산자법 제23조	"	33,822	2016.6.29.-2016.8.22	2016.8.31
"	2016	"	○○면○○리 산00-0번지 외00	49.2	대행	산자법 제23조	"	43,010	2016.6.29.-2016.8.7	2016.8.17
"	2016	"	○○면○○리 산000-0 외00	43.29	대행	산자법 제23조	"	39,831	2016.7.18.-2016.8.21	2016.8.31
합천군	2015	어린나무 가꾸기	○○면○○리 00번지외00개소	38.9	대행	산자법 제23조	합천군 ○○○○	33,881	2015.6.25.-2015.8.3	2015.8.3
"	2015	"	○○면○○리 산00번지외0개소	23.4	대행	산자법 제23조	"	23,794	2015.6.25.-2015.8.3	2015.8.3

그러나, 2015. 1. 26.부터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○○○○ 및 ○○○○중

양회에 풀베기, 덩굴류제거,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등 숲아베기를 수반하지 않는
숲가꾸기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없는데도, ○○○○과 부
적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.

조치할 사항 통영시장, 밀양시장, 의령군수, 함안군수, 창녕군수, 하동
군수, 함양군수, 합천군수는

산림사업계약자 선정 시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따라
숲아베기를 수반하지 않는 숲가꾸기사업을 부적정하게 수의계약 되지 않도록
주의 하시고,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